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73호

**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
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서울특별시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- 명 칭 : 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동작구 상도동 188-19 외 11필지
- 면 적 : 2,384.0㎡

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2년 12월 1일

3. 사업의 종류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
- 명 칭 :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
- 대표자 성명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8335352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

1)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번		공부면적	편집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
1	동작구 상도동	188-8	대	112	11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2	동작구 상도동	188-19	대	724	724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3	동작구 상도동	188-21	대	109	10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4	동작구 상도동	188-36	대	169	16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5	동작구 상도동	188-37	도로	367	47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2.81%			
6	동작구 상도동	188-38	대	192	19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7	동작구 상도동	188-39	대	192	19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8	동작구 상도동	191-4	대	330	330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9	동작구 상도동	191-6	대	132	13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0	동작구 상도동	191-21	대	30	30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1	동작구 상도동	191-22	대	119	11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2	동작구 상도동	193-6	대	228	228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 자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합계				2,704.0	2,384.0	-					

2)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사용 승인일자	규 모			소유자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번					연면적 (㎡)	지하 (층)	지상 (층)		권리 명세	권리자	주소
1	동작구 상도동	188-19 외6필지	대	의료시설 (병원)	철골철근 콘크리트	1984.05.25	5,000.5	2	8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2	동작구 상도동	188-39	대	의료시설	철근콘크리트, 경량철골	2005.07.18	599.84	1	6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3	동작구 상도동	188-36	대	단독주택	벽돌조	1994.07.13	293.8	1	3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4	동작구 상도동	193-6	대	단독주택	벽돌조	1996.06.14	312.36	1	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계		2,384.00	-	2,384.00	100.0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536.00	감)497.06	38.94	1.63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848.00	감)1,772.16	75.84	3.18	
상업 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2,269.22	2,269.22	95.19	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설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	-	증)2,384.0	2,384.0	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(02-2133-6297)와 동작구 건축과 3층 건축과(02-820-98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

- 명 칭 : 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8-19 외 11필지
- 면 적 : 2,384.0㎡
-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: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·사회초년생·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

- 명 칭 :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2호
- 대표자 성명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8335352

3. 사업기간 및 채원조달계획

- 사업기간 : 지구지정일 ~ 2026년
- 채원조달계획 : 자기자본, 금융기관 조달 등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유 형	주택유형			
주택건설용지	공동주택용지	2,269.22	95.19	
	단독주택용지	-	-	
	근린생활시설용지	-	-	
	소계	2,269.22	95.19	
기반시설용지(도로)		114.78	4.81	
판매·업무시설용지		-	-	
그 밖에 시설용지		-	-	
합계		2,384.0	100.0	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1) 수용인구 : 약 350인

2) 주택건설계획 : 238세대

구 분			세대수(세대)	비 율(%)	수용인구(인)	비 율(%)	비 고
공공임대주택	공공임대주택	25Type	36	15.13%	36	10.28%	
		51Type	3	1.26%	3	0.86%	
		53Type	2	0.84%	2	0.57%	
		62Type	11	4.62%	29.15	8.32%	
		61Type	12	5.04%	31.8	9.08%	
		소계	64	26.89%	101.95	29.11%	
	sh선매입	25Type	55	23.11%	55	15.71%	
		소계	55	23.11%	55	15.71%	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	25Type	45	18.91%	45	12.85%		
	35Type	1	0.42%	1	0.29%		
	51Type	14	5.88%	14	4.00%		
	53Type	14	5.88%	14	4.00%		
	48Type	1	0.42%	2.65	0.76%		
	62Type	23	9.66%	60.95	17.40%		
	61Type	21	8.82%	55.65	15.89%		
	소계	119	50.00%	193.25	55.18%		
합 계			238	100.00%	350.2	100.00%	

※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의 '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'을 적용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1) 환경보전계획

가)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

-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의 순환기능)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) 조성 및 옥상녹화,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
-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근린생활시설,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,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

나) 환경오염 저감계획

-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,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행

2) 탄소저감계획

가) 녹지계획

-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, 옥상녹화 등) 하고,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

나)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

- 대상지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
- 자전거 보관소, 나눔카 등을 설치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

다)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

- 충분한 녹지조성,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억제하고,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
-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(도면계재생략)

[붙임]

I. 도시·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가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2,384.00	-	2,384.00	100.0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536.00	감)497.06	38.94	1.63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848.00	감)1,772.16	75.84	3.18	
상업 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2,269.22	2,269.22	95.19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		
-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3종일반주거지역	근린 상업지역	2,384.00	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

II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설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	-	증)2,384.0	2,384.0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결정사유
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	2,384.0	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가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(1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2,384.00	-	2,384.00	100.0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536.00	감)497.06	38.94	1.63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848.00	감)1,772.16	75.84	3.18	
상업 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2,269.22	2,269.22	95.19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변경사유
		기 정	변 경		
-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3종일반주거지역	근린 상업지역	2,384.00	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

(2)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해당사항 없음)

나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(1) 획지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-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	2,269.22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㎡)	결정내용	결정사유
-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	2,269.22	획지	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계획 수립

나)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(1) 건축물의 용도계획(신설)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지정용도(1)	• 공동주택(주거복합)주1	동작구 상도동 188-19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
불허용도(가)	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•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•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•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• 위락시설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• 자동차 관련 시설 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• 자원순환 관련 시설 • 교정 및 군사 시설 • 발전시설 • 묘지 관련 시설 • 장례시설 • 야영장 시설	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•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	•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(신설)하고자 함

(2) 건축물의 밀도계획(신설)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건폐율	• 60% 이하	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
용적률	• 기본용적률 : 540.00% 이하 • 상한용적률 : 612.01% 이하	•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준용 •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[법적용적률 이하] - 원화용적률의 50%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
높이	• 74m 이하	-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결정내용		결정사유
-	용적률	상도동 188-1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	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적용함
	높이	상도동 188-1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최고높이 적용	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

(3)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

구 분		적용기준	계획내용	비 고
공공 기여율	기본 용적률 (540% 이하)	• 부지면적의 21.10%이상주2 - 2,269.22×21.10% = 478.81㎡	• 기본공공기여 : 479.01㎡(21.11%) [47세대]	기본 용적률 540% 부여, 상한 용적률 612.01%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동작구 상도동 188-1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
	상한 용적률 (612.01% 이하)	• 완화용적률(72.01%)의 50%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- 용적률 36.01% 이상 - 연면적 817.03㎡ 이상	• 추가공공기여 : 용적률 36.73%[17세대] -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: 833.50㎡(36.73%) [완화용적률 72.01%의50% = 36.01%] ※ 환산부지면적 : 136.19㎡ (6.00%)	
비주거 비율		• 10%이상 20%이하 (가로변□ 비주거□ 설치□ 의무)	• 주거 : 비주거 = 89.30% : 10.70%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• 주택규모 : 전용면적 20㎡ ~ 60㎡ - 1인(세어형 포함) 세대 : 실사용 25㎡ 이상 - 2인 이상 세대 : 실사용 45㎡ 이상	• 공공임대주택 25Type(36세대), 51Type(3세대), 53Type(2세대), 62Type(11세대), 61Type(12세대) • SH선매입 25Type(55세대) 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5Type(45세대), 35Type(1세대), 51Type(14세대), 53Type(14세대), 48Type(1세대), 62Type(23세대), 61Type(21세대)	
		•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-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- 에너지효율 건축물 - 친환경 건축물 - 공공시설물 설치 - 「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	• 에너지 효율 건축물 • 친환경 건축물	
건축물 형태	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	
주민공동시설 (커뮤니티시설)		• 「청년주택 운영기준」 3-3-9 - 100세대 이상~ 300세대 미만 : 150㎡ 이상	• 239.93㎡(지상3층)	

주2) 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 가중평균 공공기여율 적용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

(4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 고
건축한계선	간선도로변	• 대지경계로부터 3m	
	이면도로변	•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	
벽면지정선	간선도로변	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(지상1~3층)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• 건축한계선 지정	• 보행자도로 및 차도 확보를 위해 대지 및 도로 경계로부터 3m 폭원 건축한계선 결정
	• 벽면지정선 지정	• 상도로변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대지 경계로부터 5m 폭원 벽면지정선 결정
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 고
전면공지	간선도로변	•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	
	이면도로변	•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1.5m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• 간선도로변 :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• 이면도로변 : 차도부속형 전면공지	•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부분에 보도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

나) 공공기여 계획(신설)

구 분			공공기여 기준	공공기여 계획	비 고
근린상업지역	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	기본용적률 (부지면적)	- 부지면적의 21.10%이상주3 - $2,269.22 \times 21.10\% = 478.81\text{m}^2$	기본공공기여 : 479.01m^2(21.11%)[47세대]	
		상한용적률 (면면적)	- 완화용적률(72.01%)의 50%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- 용적률 36.01% 이상 - 면면적 817.03m^2 이상	- 추가공공기여 : 용적률 36.73%[17세대] -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면면적 : 833.50m^2(36.73%) [완화용적률 72.01%의 50% = 36.01%] ※ 환산부지면적 : 136.19m^2 (6.00%)	

주3) 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 → 근린상업지역 가중평균 공공기여율 적용

III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IV. 방재계획

1. 하천재해 : 본 계획지구 영향 미미하여 하천재해 저감방안 미수립
2. 내수재해 : 우수계획시 “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”을 고려하여 환경결정, 지하공간 등 침수예방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, 기존 배수체계 유지하여 배수처리계획 수립
3. 토사재해 :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등 설치하여 토사유출 저감
4. 바람재해 : 대상 건축 시설물 등의 내풍설계 기준 적용

V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1.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 번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성 명	주 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 소
1	동작구 상도동	188-8	대	112	11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-	-	-
2	동작구 상도동	188-19	대	724	724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 번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성 명	주 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 소
3	동작구 상도동	188-21	대	109	10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4	동작구 상도동	188-36	대	169	16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5	동작구 상도동	188-37	도로	367	47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2.81%			
6	동작구 상도동	188-38	대	192	19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7	동작구 상도동	188-39	대	192	19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8	동작구 상도동	191-4	대	330	330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9	동작구 상도동	191-6	대	132	13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0	동작구 상도동	191-21	대	30	30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1	동작구 상도동	191-22	대	119	119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12	동작구 상도동	193-6	대	228	228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 회사 제2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, 12층(역삼동, 강남센타빌딩)	100%			
합계				2,704.0	2,384.0	-					

2.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물건의 종류	구 조	사용 승인일자	규 모			소유자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 번					연면적 (㎡)	지하 (층)	지상 (층)		권리 명세	권리자	주 소
1	동작구 상도동	188-19 외6필지	대	의료시설 (병원)	철골철근 콘크리트	1984.05.25	5,000.5	2	8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2	동작구 상도동	188-39	대	의료시설	철근콘크리트, 경량철골	2005.07.18	599.84	1	6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3	동작구 상도동	188-36	대	단독주택	벽돌조	1994.07.13	293.8	1	3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4	동작구 상도동	193-6	대	단독주택	벽돌조	1996.06.14	312.36	1	2	디에스네트웍스 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 투자회사 제2호	-	-	-

3. 토지취득방법 : 사업시행자 100% 확보

4.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사업부지내 건축물,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

VI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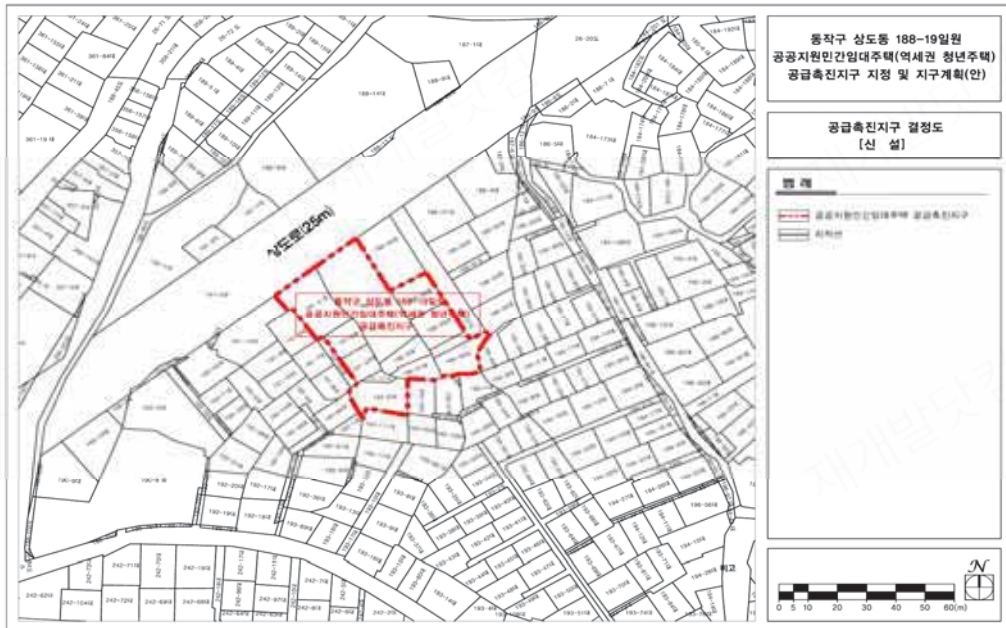
VII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「건축법」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함

VIII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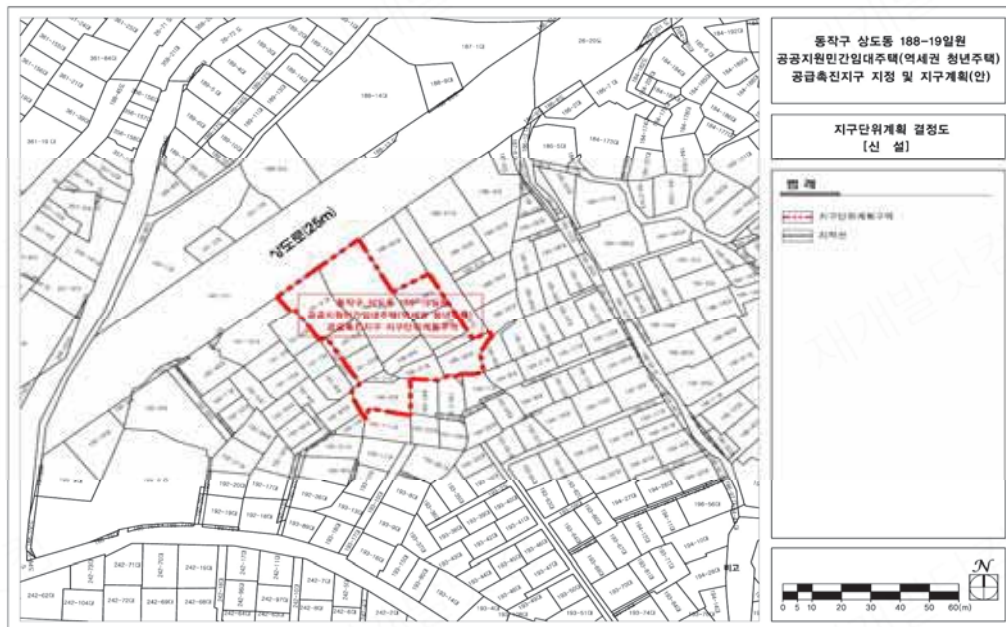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유형	주택유형			
주택건설용지	공동주택용지	2,269.22	95.19	
	단독주택용지	-	-	
	근린생활시설용지	-	-	
	소계	2,269.22	95.19	
기반시설용지(도로)		114.78	4.81	
판매·업무시설용지		-	-	
그 밖에 시설용지		-	-	
합계		2,384.0	100.0	

IX.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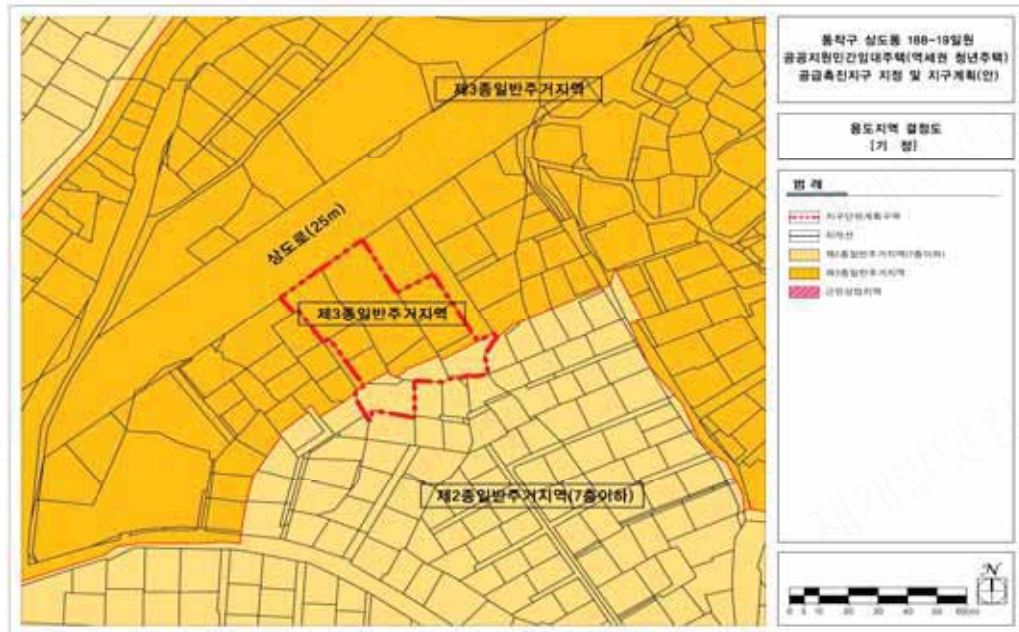
■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(신설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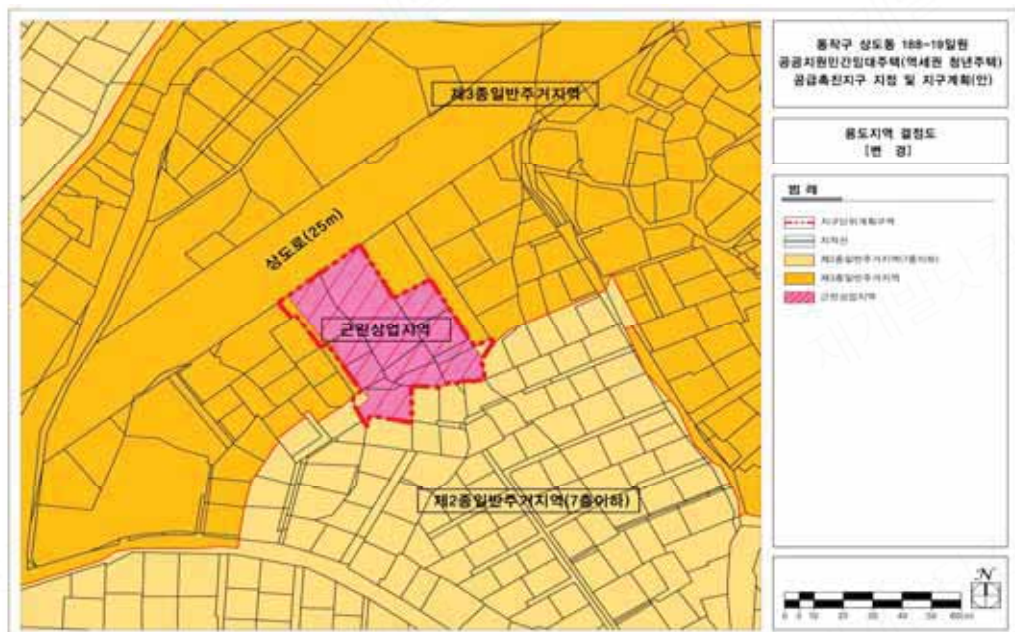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(신설)


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신설)

